

## 저술 윤리강령

2016.01.01. 제정

2018.05.28. 개정

### 1. 목적

- (1)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,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,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(2)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(혹은 게재 신청)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.
- (3)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

- (1)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.
  - ① 학술지, 단행본,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 부호, 각주, 내용 주,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.
  -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,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.
  - ③ 학술지, 단행본,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 부호, 각주, 내용 주,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.
- (2)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.
  -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.
  -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.

### 3.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(1)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.
- (2)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,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.
- (3)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,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와 편집위원회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.

#### 4. 제재방식

##### (1) 표절에 대한 제재

-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.
-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.
- 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연구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,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『연구방법논총』을 통하여 공지한다.

##### (2)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

- ①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.
- ②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.
- 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연구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,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『연구방법논총』을 통하여 공지한다.
-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.

## 5. 기타

- (1)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할 때는 원출처를 밝혀야 한다.
- (2) 본 강령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.

## 연구윤리준수서약서

본인은 학술지 『연구방법논총』 투고자로서 이 논문 작성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.

첫째, 『연구방법논총』 저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.

둘째, 논문작성 시 위조, 변조, 표절, 중복게재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.

셋째, 참여한 연구진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하고 연구에 이바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.

넷째,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에 대해서 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.

다섯째, <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목록>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.

편집위원장 귀하

### < 연구윤리 준수 자가진단 목록 >

구분		체크 항목
위조	①	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.
변조	②	연구 과정(절차)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,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다.
표절	③	이미 발표(게재)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없다.
	④	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(용어), 어휘(구), 문장, 단락, 그림, 표, 사진, 데이터 등을 출처에 밝히지 않고 직·간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.
	⑤	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바꿔쓰기(paraphrasing) 또는 요약(summarizing)을 했지만,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없다.
	⑥	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없다.
	⑦	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 없다.
	⑧	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.
	⑨	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(主從)의 관계가 없다.
	⑩	타인(1인 또는 다수)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시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.
	⑪	인용한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

		표시했지만, 실은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았다.
중복게재	⑫	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지 않았다.
	⑬	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.
	⑭	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.
부당한 저자표시	⑮	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했다.
	⑯	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..
예방적 노력 여부	⑰	외부위탁 또는 원고청탁 결과물을 검수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검토하지 했다.
	⑱	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에 대해 SW 점검과 같은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.